

## 회비세칙 규정

1991. 1. 12 제정  
1995. 4. 29 개정  
2004. 11. 13 개정  
2009. 2. 21 개정  
2019. 2. 22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9조에 의하여 본 학회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비의 징수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종류)**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, 개인회원 연회비(이하 "개인회비"라 호칭), 종신회비, 임원회비, 단체회비, 간행물회비로 한다.

**제3조(입회비)** 개인회원으로 입회할 시에는 당해년도의 개인회비와 같은 금액을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개인회비)** 정회원의 연회비인 개인회비는 30,000원으로 한다.

**제5조(종신회비)**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는 대신 400,000원을 일시납부 함으로써 개인회비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.

**제6조(명예회원의 회비)** 명예회원에 대한 회비납부 의무는 면제한다.

**제7조(임원회비)**

1. 본 학회의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는 개인회비와는 별도로 매년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전항의 임원에 대한 연회비는 100,000원으로 한다.

**제8조(단체회비)**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간행물회비)** 간행물회원은 매년 10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수령한다.

**제10조(회비 및 기타부과금의 납부기한)** 회비 및 본회에 납부해야 할 모든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당 회계연도 11월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11조(납부영수증 납부)** 회비 및 기타부과금을 수령한 경우 사무국장은 납부내역을 명기한 영수증을 즉시 발부하여 증빙토록한다.

**제12조(회비의 변경)** 회비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비는 총회에서, 임원회비는 이사회에서, 단체회비와 간행물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